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회의록

○ 일시 : 2020.1.6.(월) 16:30~17:40

○ 장소 : 서대문구청 3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차승연 의원, 관내-외 먹거리 관련 협동조합, 어린이집 관계자, 협치분과, 주민, 서대문구청 사회적경제과, 기획예산과 공무원 등 70여명

○ 진행순서

1. 인사말씀 및 내빈소개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안) 설명 : 차승연 의원
3. 토론 : 사회자-탁현배 서대문공공급식센터장
 - 토론자1. 윤병선 건국대학교 교수
 - 토론자2. 길청순 지역농업네트워크 경기제주지사장
4. 질의응답 및 의견제시

○ 간담회 내용

[토론자 발표내용은 첨부된 토론자료 참조]

질문1) 토론자가 제안한 분과구성 방향에 차이가 있는데, 먹거리는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어떤 분과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 윤병선 교수 / 4개 분과위원회 : 건강, 보장, 안정, 상생

길청순 지사장 / 3개 목표 : 소외 없는 밥상, 배려하는 밥상, 함께하는 밥상

답변) 윤병선 교수 : 기후변화, 생태와 관련된 부분은 ‘상생’이라는 부분에서 함께 담았다. 자연을 포함한 모든 생태계는 의존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서대문구 푸드플랜에서 주민과의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3개의 분과위원회에 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답변) 길청순 지사장 : 환경분야는 ‘배려하는 밥상’에서 환경과 농업배려 관점을 가지고 접근했다. 먹거리전략이 워낙 통합적이고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어서 매우 큰 화두인 환경을 전면에 내세우면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환경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다양한 부분에 흡수되도록 접근했다.

답변) 차승연 의원 :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많은 고민이 있었고, 환경부분은 배려하는 밥상에 포함해서 논의하면 될 것이다. 조례상에 분과명을 명시할 필요까지는 없고 ‘분과를 나눠 논의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명시할 수 있다.

질문2) 제10조에 실태조사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민영양실태조사가 지역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조사내용인지 궁금하다.

답변) 윤병선 교수 : 국가단위 실태조사는 매우 광범위하고 조사항목이 많아서 지역에서 유효하게 활용하기는 어렵다. 서대문구에서는 조사를 위해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구

민에 맞는 먹거리보장, 접근성 등이 선결적인 조사항목이라고 본다.

답변) 길청순 지사장 :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서울시와 같은 광역단위는 유효할 수 있으나 자치구 단위 조사는 유효하지 않다.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먹거리와 관련된 조사가 포함되어 있으니 조사항목을 자치구에서 조정하여 유효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다.

답변) 차승연 의원 : 서울시 조례를 참고하여 안을 작성하였으며, ‘2년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한 이유는 조사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전문가와 관계자의 의견을 받아 조정하도록 하겠다.

질문3) 제23조(먹거리네트워크)를 조례에 담게 되면 민간의 자발적인 모임이 아닌 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조직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

답변) 차승연 의원 : 먹거리네트워크를 강력하게, 그리고 곳곳에 명시한 이유는 민관협력 파트너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다. 먹거리네트워크는 관 중심의 분과위원회와 달리 명확히 민간의 역할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답변) 윤병선 교수 : 먹거리네트워크는 민의 조직으로서, 민간을 대상화할 수 있는 조항이 될 수도 있다.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조항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질문4) 제24조(먹거리 민관협치 실무협의회) 운영은 민관협치하는 것이 맞긴 하나, 명칭은 ‘운영위원회’와 같이 명확히 하고,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 모호하다.

제6항을 보면 실무협의회에 ‘먹거리네트워크에서 추천하는 사람 6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먹거리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니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비영리단체, 사회적경제조직 등에서 추천하는 6명’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답변) 차승연 의원 : 명칭은 조정가능하다고 본다. 조례가 협치덕목을 중요하게 담고 있으며,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위로 실무협의회로 설정한 것이다. 기능은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답변) 윤병선 교수 : 실무협의회는 운영위원회 형태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구성에 있어서는 참여의사가 있는 주민공모방식도 가능하다. 먹거리위원회가 민관협치체로서 명실상부한 조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질문5) 제26조(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제27조(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보면 통합지원센터가 공급에 매어있는데, 향후 센터의 방향성은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가는 것을 제안한다.

답변) 차승연 의원 : 유통과 공급기능을 하는 공공급식센터를 포함한 통합지원센터를 고민한 것이다.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기능 중 식생활교육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가 있으니 그 조례를 근거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답변) 윤병선 교수 : 지금의 조례안 통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능을 담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통합지원센터가 물류유통, 공급확대 중심으로 인식되는 부분은 회피할 필요가 있다.

질문6) 제28조(먹거리 주간 운영)은 서울시도 먹거리 주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서대문구에 맞을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조례에 명시하는 것보다 실무단위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답변) **차승연 의원** : 정책이 주민에게 와닿는 유일한 조항이라고 생각하며, 주간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나 소비촉진 뿐만 아니라 먹거리교육, 정책홍보 등의 다양한 형태로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본다.

질문7) 제16조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현재 구성을 보면 사람이 겹칠 우려가 있다. 주민자치회의의 경우 전문가도 참여하지만 사전교육을 받고 교육을 이수한 주민이 일정부분 추천되는 것과 같이 참여를 원하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구성요건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답변) **차승연 의원** : 주민참여예산위원의 경우도 교육을 통해 위원이 되기도 한다. 관심있는 주민의 참여를 열어두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며, 교육내용이 중요하다고 본다.

질문8) 제10조 실태조사를 위해 기존의 구청 행정조직에서 했던 항목과 조례 제정으로 새로이 추가되는 항목이 구분되는지, 조사항목과 관련한 예산배분 현황은 어떤지 궁금하다.

답변) **길청순 이사장** :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표본수가 적고 자치구에서 참고할 만한 수치는 아니다. 안전, 위생,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등은 행정자료가 있고, 음식물류는 환경부사이트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먹거리정책의 대상에 대한 추적조사가 실질적인 정책평가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답변) **윤병선 교수** : 가장 시급한 먹거리보장과 관련되고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실태조사는 예산을 투입해서 구청에서 직접 해야 한다. 자치구는 실태조사를 빼도 무방하지만 먹거리보장과 관련된 부분은 중요하므로 살려둘 필요가 있다.

○ 공청회 사진

